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35
----------	------

발의년월일 : 2019년 9월 26일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1명)

찬 성 자 : 유 용, 송명화, 오현정, 이병도,
김화숙, 강대호, 이은주, 최웅식,
이광호, 양민규 의원(10명)

1. 제안이유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교육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여 서울시의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취약계층 등의 보호) ①·② (생 략)</p> <p><u><신 설></u></p>	<p>제4조(취약계층 등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제3항 ‘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총 비용 : 900,000천원(연 평균 18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내용 및 조항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세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안 제4조3항)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900,000

○ 비용 추계 전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서 취약계층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을 말하고 있으므로 교육 대상자는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함
-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2019년 서울시 대기정책과 ‘영유아의 미세먼지 바로알기(시민참여)’ 사업에서 추진하는 교육 강사료 지급 및 교육홍보물 제작 등 비용으로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30,000천원이므로 모든 대상의 총 사업비도 일괄적으로 각각 30,000천원 소요된다고 가정(별첨 : 영유아 미세먼지 바로알기(시민참여) 추진계획)

- 6개 분야의 대상에게 각각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가정
- 향후 5년 동안 사업비의 증감은 없는 것으로 전제

○ 비용 추계 산식

- 지원 대상(6개) × 교육 사업비 등(30,000천원) = 180,00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주 무 관 박경순

☎ 02-2180-7933

e-mail : kssunbi@seoul.go.kr